

#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

##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적용\*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이 글은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를 하버마스 '담론 윤리'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서 검토한다. 전통적 언론 윤리는 (가) 다원적 윤리적 기초 간 모순성, (나) 객관주의 언론 규범에 대한 무기력함, (다) 언론 윤리 최종 판단 근거로서 공익이 갖는 약한 실천적 함의 등 때문에 오래된 윤리적 과제는 물론 디지털 뉴스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과제를 해결하는 데 역부족을 보이고 있다.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소통으로서 권력 개념'을 전제로 삼아 언론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공론장에서 의견 교환이 갖는 민주적 정당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전제를 확립한 후, 이 글은 하버마스가 제시한 '담론 윤리'를 원리로 삼아 윤리적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도 언론이 민주주의에 기여할 방법을 모색한다.

**KEY WORDS** 언론 윤리, 사실성, 공정성, 하버마스, 담론 윤리, 알고리듬 뉴스 생산

---

\* 이 연구는 방송문화진흥회 2016년 해외연구지원사업의 도움을 받아 수행한 것임을 밝힙니다.

\*\* jwrhee@snu.ac.kr

## 1. 문제의 제기: 언론 윤리 지형의 변화

사실성, 객관성, 공정성, 불편부당성 등은 언론 윤리의 핵심 개념들이다. 언론이 사회적 제도로 자리 잡는 과정이란 언론인들이 이런 가치 개념들을 ‘전문적’ 직업 규범으로 수용해서 내면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21세기 디지털 시대에 언론 윤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뉴스의 제작, 전달, 수용 등 전 과정에 디지털 혁신이 발생하면서, 전통적인 언론 윤리의 개념을 언론 현실에 적용해서 윤리적 판단을 내리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 제기가 일고 있다. 심지어 기존 언론 윤리의 핵심 개념들이 타당한지 의심을 제기하기도 한다. 다음 몇 가지 변화가 언론 현실의 변화와 그에 따른 윤리적 판단의 전환을 예시한다.

첫째, 실시간에 가까운 뉴스 전달로 인해서 뉴스 제작, 전달, 수용의 주기성이 급속하게 해체하고 있다. 일간, 주간, 월간과 같은 뉴스 주기는 점차 의미 없는 개념이 되고 있다(Westin, 2016). 24시간 방송 뉴스가 주요한 뉴스 제공자로 자리 잡으면서 ‘흐름으로서 뉴스’가 주류가 됐고(Nielsen & Sambrook, 2016; Sambrook & McGuire, 2016), 신문마저 ‘디지털 우선(digital first)’을 선언하면서 모든 뉴스가 ‘끊임없이 갱신하는 뉴스’가 됐다(Karlsson, 2011; Usher, 2014). 끊임없이 갱신하는 뉴스에는 마감도 없고 강판도 없다. 모든 뉴스는 다음 뉴스의 배경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개별 기사의 경계가 불투명해진다. 사건의 전개에 따라 시각각 갱신하는 뉴스의 흐름이 있을 뿐이다.

뉴스 주기 개념의 해체로 인해, 뉴스의 사실성(factuality)과 정확성(accuracy)에 대한 기대에 변화가 생긴다. 현재진행형으로 전개하는 사건에 대해 ‘끊임없이 갱신하며’ 보도하는 뉴스를 접하는 이용자들은 그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라면 얼마나 정확한지 확인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뉴스의 사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기도 전에 사건의 전개에 따라 뉴스 업데이트가 나오고, 관점과 해석을 달리 하는 경쟁적 뉴스가

등장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끊임없이 갱신하는 뉴스’란 뉴스의 사실성과 정확성 평가를 유보할 수밖에 없는 뉴스를 의미한다. 이런 조건에서 개별 뉴스를 ‘참 또는 거짓’과 ‘정확 또는 비정확’ 등 이원적 코드를 적용해서 평가하기 어렵게 된다.

둘째, 뉴스라고 부르기 어려운 경계적 내용물들이 뉴스처럼 돌아다닌다. 최근 논란이 되는 ‘가짜 뉴스’를 논외로 하더라도 뉴스처럼 보이는 데 실은 뉴스가 아닌 내용이 많다. 예컨대, 포털이나 언론사 사이트의 기사 댓글 서비스는 ‘형식적으로 보면’ 전통적 뉴스라 말할 수 없지만, ‘이용의 관점에서 보면’ 뉴스 서비스의 일부다. 동영상 채널, 팟캐스트, 개인 블로그, 인터넷 공동체의 게시글 중에는 형식적으로 뉴스 양식을 띤 내용물이 있지만,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면 뉴스라고 부르기에 부족한 것들이 많다. 취재와 제작의 규범과 관행이 전통적 언론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고양이 사진이나 관광지 정보와 같은 내용을 제공하면서 광고 수익을 노리는 내용 제공 사업자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자를 언론이라 불러야 할지 애매하다.

경계적 내용이 유행하는 시대에 언론 윤리는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일단 이런 내용물에 전통적인 언론 윤리를 적용해야 할지가 문제다. BBC 뉴스는 불편부당하고 뉴욕 타임스 기사라면 객관적이라는 기대는 역사적으로 형성된 것이며, 그래서 정당하다. 그러나 페이스북의 ‘타임 라인’과 버즈피드의 ‘푸시알림’에 대해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을 기대하는 이는 별로 없다. 페이스북은 현재 다른 어떤 언론사보다 많은 양의 뉴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기사를 생산하지 않는다. 버즈피드는 독자적인 편집 기준을 가진 언론사처럼 운영하고 있지만, ‘네이티브 광고’와 같은 수익 모형에 의존해서 편집하는 한 전통적 언론사와 같다고 말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런 사업자들에 대해 불편부당성이나 객관성을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것 자체가 적절한지 의심스럽게 된다. 이런 사업자에게 불편부당성이나 객관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과 범

위가 무엇인지 애매하다. 누구도 페이스북과 버즈피드에 대해 BBC나 뉴욕타임스 수준의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페이스북과 버즈피드에 대해 아예 불편부당성과 객관성을 요구할 수 없다고 믿는 자도 없을 것이다.

셋째, 알고리듬이 편성과 편집을 담당한다(Anderson, 2013; Just & Latzer, 2016; Latzer et al., 2014; Napoli, 2014). 포털, 검색엔진, 교류 매체 서비스 등 뉴스 플랫폼이 지배적인 뉴스 제공자로 자리 잡은 가운데, 뉴스 편성은 소수 기술경영자가 관리하는 알고리듬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기계는 이미 날씨, 스포츠, 주식 시장, 부고 기사를 쓰고 있으며, 기계가 작성한 기사의 품질은 인간 편집자가 최소한도의 수정을 거쳐 즉시 출판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Bakker, 2012; Napoli, 2014). 기계는 최근 ‘자기 학습’을 통해서 스스로 작업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진화 중이다.

알고리듬 뉴스생산이 이루어지면서 공정성과 불편부당성 같은 언론 윤리 개념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가 된다. 뉴스 생산 알고리듬을 만드는 것은 개발자지만, 알고리듬에 따라 기사를 작성하는 데 필 요한 ‘특성들(features)’은 뉴스 이용자의 행위 자료에 기초한다. 이런 특 성들이 알고리듬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어떤 효과를 내는지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뉴스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뉴스의 편집과 편성을 책임지는 자가 누군지 알지 못하며, 자신이 이용하는 뉴스의 내용에 대해 불평하기 어렵게 된다. 뉴스 이용자가 접하는 뉴스는 실은 동료 이용자의 행위에 따라 선택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 이를 ‘여과기 거품(filter bubble)’ 현상이라 부르며, 이 현상이 초래하는 선별적 뉴스 이용과 그로 인한 관점의 제한성을 경고하는 우려가 있다(Pariser, 2012). 그러나 진정한 문제점은 이런 방식의 뉴스 생산과 유통이 초래한 결과에 대해 누구도 윤리적 책임을 따지기 어려워진다는 데 있다. 뉴스 제공 알고리듬의 기술적 복잡성이나 불투명성은 언론 윤리상의 책임 회

피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

뉴스 주기가 해체되고, 경계적 내용이 뉴스처럼 유통되고, 알고리듬 뉴스 생산이 일반적이 되는 디지털 뉴스 시대에 언론 윤리는 달라지는가? 공정성, 불편부당성, 객관성 등과 같은 전통적 언론의 핵심 가치는 디지털 뉴스 시대에 변하지 않고 남아 있을 수 있는가? 전통적 언론의 실천에서 논란이 일었던 윤리적 사안들은 디지털 뉴스 시대에 악화할 것인가 아니면 개선될 것인가? 이 글의 목적은 디지털 뉴스 시대에 언론 윤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그 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2장에서 나는 전통적 언론 윤리 담론이 저한 어려움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전통적인 언론 윤리에 대한 담론은 이미 어려움에 처해 있다. (가) 다원적인 언론 윤리 원리들 간에 모순이 뚜렷하며, (나) 오래된 규범인 객관주의 언론 규범은 무기력해지고 있다. 또한 (다) 언론 윤리 최종 판단 근거라 인정되는 공익(public interest)은 실천적 함의가 약한 문제를 갖는다. 나는 전통적 언론 윤리 담론은 디지털 뉴스 시대에 새롭게 대두하는 언론 윤리 관련 현실을 다루는 데도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통적인 언론 윤리의 문제였던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discourse ethics)’를 원리로 삼아 언론 윤리의 규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하겠다.

담론 윤리를 원리로 삼은 언론 윤리의 규칙을 도출하기 전에, 제3장에서 먼저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가 제시한 ‘소통으로서 권력 개념’을 소개하겠다. 언론은 오랫동안 사실과 진실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집착을 보였는데, 이로부터 벗어나 공론장에서 의견 교환이 갖는 민주적 정당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나 아렌트의 ‘소통으로서 권력 개념’을 발판으로 삼아 제4장에서는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소개하고 이 개념을 원리로 삼아서 어떻게 언론 윤리의 규칙을 도출할 수 있는지 논의하겠다.

제5장은 디지털 뉴스 시대에 새롭게 대두한 언론 현실에 따른 윤리

적 과제가 전통적인 언론 윤리 규범이 대응한 문제와 완전히 다른 것은 아니라는 관찰을 제시한다. 이 관찰을 제시하는 이유는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현실의 변화를 논의할 때, 오래된 언론 윤리의 담론에 얹매여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언론 윤리와 완전히 결별한 새로운 윤리가 필요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제6장은 (1) 뉴스 주기의 해체에 따른 접근적 사실성의 대두, (2) 경계적 내용에 대한 언론 윤리의 요구, (3) 알고리듬 뉴스 생산에 대한 책임성 부여 등을 담론 윤리의 관점에서 검토하고 실천적 함의를 제시한다. 결론에서는 담론 윤리를 원리에서 도출한 언론 윤리의 규칙은 궁극적으로 민주적 여론 형성을 통해 민주주의 자체에 기여하는 언론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을 제시한다.

## 2. 전통적 언론 윤리의 다원성과 모순성

전통적인 언론 윤리는 다원적인 양상을 보인다. 다원성은 비체계성을 낳기도 한다. 언론 윤리에 대한 교과서(예, Christians et al., 2011; Patterson & Wilkins, 2013; McBride & Rosenstiel, 2013)나 연구서(예, Couldry, Madianou & Pinchevski, 2013)를 보면, 다종다양한 윤리 이론과 그로부터 도출한 원리를 현실에 적용한 사례를 나열적으로 제시한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칸트의 의무론, 경험주의자의 후생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윤리론 등을 각각 소개하고 각 관점에 따라서 다양한 사안에 대해 이리저리 접근할 수 있다는 식으로 ‘윤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흥미롭게도, 이렇게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하는 가운데 ‘사실’과 ‘진실’이란 개념은 빠뜨리지 않고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언론 윤리 분야에서 대표적 교과서 중 하나인 〈좋은 뉴스, 나쁜 뉴스〉에서 아이거스가 논의를 전개하는 방법도 그렇다.

아이거스(Iggers, 1999, pp. 27-29)는 언론의 사회적 역할 자체가 다중적이기 때문에 언론 윤리 이론들도 상충하고 모순된다고 보았다.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중계하는 언론으로서 다면적이고 모순적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언론 윤리 또한 일관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해명은 가치 다원주의(value-pluralism)적 관점을 언론 윤리에 적용한 것이다. 예를 들면, 언론은 동시에 (가) 민주적 여론 형성의 제도이며, (나) 기업으로서 영리를 추구하며, 때로 (다) 집단의 정체성의 형성자이기도 한데, 이런 다원적 역할은 필연적으로 다양하고 모순된 관점을 함의한다. 이 때문에 한 언론 윤리 사안에 대해 민주주의 정치 이념을 적용할 수도 있고, 시민사회 행위자의 책임 윤리를 적용할 수도 있고, 또는 공동체주의적 윤리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다원적 접근은 대체로 모순된 접근들을 만들어 낸다. 다원적 접근이란 실은 내적 일관성과 타당성을 결여한 대안을 낳는다.

아이거스는 언론인들은 때때로 외부의 규제를 두려워해서 방어적이 되거나, 아니면 고용된 처지로서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해서 독자적으로 이념을 주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윤리적 담론 자체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날카롭게 지적한다. 언론은 적극적 방어를 위해서 스스로 고유한 이념과 가치를 형성해 왔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언론의 객관주의(journalist objectivity)다. 일찍이 터크만(Tuchman, 1978)은 언론의 객관주의란 일종의 ‘전략적 의례(strategic ritual)’로서 외부의 규제나 비판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지적했다. 객관주의 언론 규범의 형성 과정을 역사적으로 탐구한 셋슨(Schudson, 1978, 2001)에 따르면, 언론의 객관주의란 ‘주장의 사실성을 확인하고’,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고’, ‘주관적 판단을 배제한다’ 등 규범을 뜻한다. 셋슨은 20세기 초 직업적 정체성을 잡아 가던 미국 언론인들이 사실과 진실에 대한 확신 때문이 아니라, 의심 때문에 객관주의 이념을 형성했다고 보았다.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정부 홍보와 광고 및 홍보의 영향력에 대항해서 독자적인

직업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후배들에게 전수하려고 이념화하는 과정에서 실천적 규범이 필요했다는 것이다.<sup>1)</sup> 지금까지 논의를 정리하자면, 언론은 다원적인 윤리 이론을 받아들여서 사안에 따라 그리고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동시에, 별도로 언론인의 실천적 규범으로 ‘객관주의 규범’을 형성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실과 진실에 대한 언론의 집착은 언론 윤리의 모순성을 드러낸다. 언론은 진실 탐구라는 목표를 강조하고 사실 보도라는 실천 행위를 강화할수록 자신의 실천적 정체성으로부터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언론은 실은 사회적 사건에 접근해서 ‘선(the good)’과 ‘옳음(the right)’을 합의하는 이야기를 전달한다기보다 사회적 현실에 대한 탐구를 근거로 ‘참(the true)’ 또는 진실을 확립하는 제도로 자신을 규정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과연 진실을 확립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이런 일을 언론이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지녔는지는 더욱 불분명하다. 이 문제를 선구적으로 탐구한 월터 리프만 (Lippman, 1922)은 당대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국 언론이 진실을 확립하기 위한 역량을 갖추지 못했다고 통렬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언론의 내부가 아닌 외부에 일종의 ‘정치 관측소(political observatories)’를 만들어 ‘세계의 상을 정확하게 그리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당시 언론은 리프만의 이런 비판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언론은 현실적으로 작동하는 객관주의 규범을 수용하고 해석하면서, 동시에 그 객관주의 규범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견뎌야 하는 모순적 입장에

---

1) 미국에서 언론의 객관주의 실천이 등장한 배경과 규범으로 확립된 시기를 놓고 언론학자 간 진행한 논쟁이 있다. 이 논쟁은 객관주의가 뉴스 내용인지, 언론인의 실천인지, 언론인의 이념인지, 제도적 관행인지 등 언론의 객관주의의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기도 해서 단순한 역사적 시기 설정을 넘어선 논의로 발전한다. 논쟁을 요약하면서 마라스(Maras, 2013)는 셋순이 <뉴스의 발견>에서 제시한 타임라인을 따라 객관주의의 전개를 정리하고, 셋순에 대한 비판론을 보완적 견해로 통합하기도 했다. 배경과 시기가 무엇이든 간에 미국 언론의 윤리에 대한 논의에서 객관주의 규범의 중요성을 도외시할 수 없다.

처했다. 이런 모순성에 대한 에트마와 글래서(Ettema & Glasser, 1998)의 연구와 쿨드리(Couldry, 2013)의 해석이 특별히 언급할 만하다.

에트마와 글래서는 〈양심의 보호자(Custodians of conscience)〉에서 언론인이 애지중지하는 ‘사실’이 과연 철학적 실재론에서 논의하는 ‘형이상학적 실재론’에서 말하는 사실과 같은 것인지 묻는다. 형이상학적 실재론이란 인간의 정신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세계가 있으며, 그에 대한 하나의 진실하며 완전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언론인이 과연 이른바 ‘신의 눈’의 관점에서 사실을 기록하려고 뉴스를 만들고 있으며, 심지어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느냐는 것이다. 그들은 이에 부정적으로 답변하면서, 퍼트남(Putnam, 1981)의 내재적 실재론을 대안으로 인용한다. 내재적 실재론이란 진실을 ‘사물과 문장 간의 상응성’에서 찾는 상응주의 진리론(correspondence theory of truth)을 버리고 정합주의(coherence theory)를 택하거나 아니면 사물과 문장 간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진실을 ‘이상적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이라고 정의한다면, 외재적 사실을 기준으로 진실을 규정할 필요가 없다. 언론은 이런 관점을 따라 진실을 제시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언론의 보도는 ‘적합도’ 판단의 기준이 되는 어떤 가치를 전제하게 되며, 따라서 진실은 가치와 분리 불가능한 것이 된다.

에트마와 글래서는 미국의 탐사 보도 언론인들이 현장에서는 ‘사실’을 과도하게 강조하지만, 실제 언론 활동에서는 사실에 대해 대단히 유연한 자세를 보인다고 관찰했다. 특히 탐사 보도 언론인이 말하는 진실이란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확인을 엄격하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Ettema & Galsser, 1998, p. 152)이라고 한다. 진실한 뉴스를 만드는 과정에 기사의 ‘이야기적 속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언론인의 편견이 완전히 배제된 ‘관점이 없는 기술과 판단’만으로 기사를 쓸 수 없다는 것을 언론인들이 알고 있다는 뜻이다. 에트마와 글

래서는 사실 보도의 최고 양식이라 할 수 있는 템사 보도마저 언론인들이 개인 또는 집단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가 개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판단 과정이라고 보았다. 이들은 언론이 주장하는 사실과 진실이란 가치 판단을 동반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성을 주장함으로써 강력한 방어 기능을 갖는다는 점을 보여 주었다.

쿨드리(Couldry, 2013)의 언론 윤리에 대한 비판적 겸토도 중요하다. 그는 전통적인 실증적인 접근이나 의무론적 개념으로 진실의 문제를 논의하는 게 어려운 이유를 먼저 제시한다. 현대 사회의 구성원들이 갖는 광범한 세계관의 차이로 인해서 언론은 물론 누구도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 기초한 접근 방법으로 다른 세계관을 지닌 자들을 설득할 수 없다. 이런 세계관의 차이를 최소화하는 별도의 방법론을 기대할 수도 없기에, 그는 대안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윤리(the Aristotelian model of virtue ethics)를 겸토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또한 규범, 권리, 의무와 같은 추상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는 것보다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을 택하는 편이 좋겠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선’이니 ‘참’이니 하는 추상적 논의를 피해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덕성 윤리를 따라서 구체적으로 ‘공동체에 대해 좋은 것’을 찾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접근법은 추상적으로 윤리적 과제를 정식화하고 해결할 것을 주장하는 자유주의나 의무론적 입장과 대조되는 것이기도 하다.

쿨드리는 진실의 문제를 소통의 윤리로 포섭하기 위해서는 베나드 윌리엄스(Williams, 2002)의 제안을 따라서 ‘진실을 말하는 인간적 성향’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윌리엄스의 〈진리와 진실성(Truth and Truthfulness)〉은 진실성을 일종의 덕성으로 개념화하며, 그것은 ‘정확성’과 ‘진정성’이란 두 구성 요소를 갖는다고 한다. 인간이 진실해야 한다고 믿고 그러한 성향을 발전시킨 까닭은 그것이 규칙이거나 의무이거나 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인간적 성향에 남았

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일종의 ‘탐사적인 투자’가 필수적인데 이를 위해서 안정적으로 정확하면서도 진정하게 말하는 일이 필수적이다(Couldry, 2013, p. 48). 쿨드리는 세계관이 충돌하는 다원주의적 조건에서 한 가지 버전의 진실이나 정확성을 주장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보다는 안정적으로 진실을 말하고자 하는 성향을 확립하고 복돋우는 태도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리고 이런 태도가 언론 윤리를 정당화한다. 결국 사실과 진실에 얹매이는 자세를 우회해서도 언론 윤리를 정초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언론의 집착을 고려할 때, 언론 윤리의 최종심급에 위치한 가치가 ‘공익(public interest)’이라는 사실은 확실히 의외다. 공중의 이익이란 사실이나 진실과 같은 이론적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실천적 관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익이란 공중의 관심과 의견, 이해관계와 선호를 포괄하는 어떤 것으로서 가치이나 이념에 대한 것이지, 사실이나 진실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집착에서 공익으로 나가는 길은 여러 갈래인데, 그중 하나가 아이거스(Iggers, 1999)가 제시했던 실천적 자세에서 나온다. 아이거스는 앞서 논의한 전통적인 언론 윤리 담론의 모순성을 극복하기 위해,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언론과 공중의 연대를 강화하고 언론이 실천적으로 공중의 편에서 보도를 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다.

코바치와 로젠틀(Kovach & Rosenstiel, 2014)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언론의 기본요소〉에서 “언론의 최우선적 충성 대상은 시민이다”라고 선언했는데, 이 명제는 일종의 언론의 윤리적 판단에 정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민을 뉴스라는 상품과 서비스의 이용자로 보기보다 모든 언론 실천에 대한 윤리적 판단의 최종 기준을 제공하는 가치의 원천으로 보았을 때, 이들은 결국 일종의 ‘공익 우선론’을 제기한 셈이다. 예를 들어, 언론인은 때로 위장 취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위장 취재의 윤리적 허용의 한계는 그런 비윤리적 방법을

무릅쓰고도 취재 및 보도를 해야 할 정도로 현저하게 공익이 큰 정도가 돼야 한다(p. 121). 여기에서 공익이란 '집합적 시민의 이익'을 의미한다. 코바치와 로젠틀은 진실성, 독립성, 권력 감시, 공적 포럼의 제공 등과 같은 언론 윤리의 이념들이 결국 집합적 시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런 공익 우선론을 적용한 논변은 복잡한 언론 윤리 개념을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장점이 있다. 모든 언론 윤리의 과제를 해결하는 최종 결정자로 공중의 이익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익은 그 자체로 모호한 개념이다. 언론의 기본 원칙인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 등을 모두 공중의 관점에서 기술하고 공중의 이익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애초에 공익 개념이 모호하다면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 등도 마찬가지가 된다. 공중의 이익을 규정하고 적용하는 과정에서 언론인은 물론 언론학자도 공익 개념을 놓고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는 현실을 쉽게 볼 수 있다.<sup>2)</sup> 결국 공중의 이익이란 개념은 언론 윤리의 기본 가치라 할 수 있는 공정성, 정확성, 독립성 등 개념보다 어떤 점에서 더 좋은지 애매하다. 언론 윤리와 관련한 판단의 최종 기준을 언론인의 이념이나 가치가 아닌 언론 이용자의 이익으로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런 전환만으로 언론인의 실천 규범을 정당화하거나 구

---

2) 공익 개념을 이론적으로 규정하고 정당화하는 일은 악명 높을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이 문제의 어려움은 공영방송의 이념적 배경으로서 '공익'을 규정하거나, 매체 정책의 목표로서 '공익'을 규정해 온 선행 연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최근 사회 이론가들은 공익 개념을 별도의 가치나 이념으로 규정하는 형이상학적인 방법을 떠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공론장의 기능과 역할의 관점에서 경험적으로 기술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공론장도 한 가지가 아니며 여러 종류라는 지적이 등장하면서, 공론장에 대한 경험적 접근도 혼란을 보이기는 마찬가지다. 예컨대, 달그렌(Dahlgren, 1995)은 공론장을 매체 제도, 표현, 사회 구조, 그리고 사회문화적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에 따르면 공익은 제도적, 내용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인 수준에 애매하게 걸쳐 있는 복합체가 된다. 또한 페리 등(Ferree et. al., 2002)은 공론장을 이념에 따라 자유주의, 참여주의, 담론주의, 구성주의로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이렇게 보면 공익은 이념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는 이름만 같은 어떤 것이 되고 만다.

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공익은 또한 언론인의 실천 규범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개념으로 작동하기 전에, 무엇보다도 언론인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적 합의를 산출해야 한다. 즉, 언론인의 일상적인 취재, 제작, 보도에서 무엇을 하면 안 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란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해결을 돋는 실천적 지침을 주는 원리로 작동해야 한다. 그러나 공익이란 개념은 이런 식으로 실천적 지침을 준다기보다 개념적 분쟁 해결의 최후의 입막음 방편으로 활용되는 수준에 머무는 경향이 있다.

전통적 언론 윤리는 결국 다음 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어정쩡한 상태로 남아 있다. 첫째, 언론 윤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동원한 다양한 이론적 전통이 상호 모순된 상태에서 경쟁하고 있다. 둘째, 사실과 진실이란 개념을 강조하면서 언론의 객관주의 규범을 발전시켜 왔지만 이 규범은 이념과 실천 간에 새로운 모순성을 만들어 낸다. 셋째, 공익 개념이 언론 윤리의 정초적 개념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런데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은 여기에 새로운 문제를 떠맡게 된다. 뉴스 주제 개념이 해체하고, 뉴스인지 아닌지 애매한 내용물이 등장하고, 알고리듬 생산으로 언론의 편집권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전통적 언론 윤리는 그 자체로도 모순적이지만, 이렇게 새롭게 등장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속수무책인 것처럼 보인다. 이에 윤리적으로 응답하고 대처할 방법은 없을까? 한나 아렌트의 소통적 권력 개념과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새로운 언론 윤리를 형성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기초를 제공한다.

### 3. 언론 윤리의 이론적 기초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집착하는 언론인이라면 한나 아렌트가 <과거와 미

래 사이(Between past and future)》(1977)라는 책의 ‘진실과 정치’라는 글에서 주장한 바를 접하고 충격을 받게 될 것이다. 아렌트는 권력은 진실을 활용하거나, 억압하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하려고 할 뿐이어서, 정치 영역에서 진실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p. 259). 만약 정치영역에서 진실을 기대할 수 없다면, 언론이라고 해서 진실에 대해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아렌트의 이런 주장은 리프만이 〈여론〉에서 선취했던 요점이기도 하다. 앞서 소개했듯이 리프만은 세계에 대한 진실된 상에 접근하는 역할은 언론이 아닌 ‘정치 관측소’에 맡겨야 한다고 보았다.<sup>3)</sup> 언론과 정치로부터 진실을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 자체가 갖는 함의를 검토해야 하겠지만, 그 전에 이 주장이 어떤 전제를 담고 있으며 어떻게 정당화되는지 먼저 검증할 필요가 있다.

아렌트에게 진실은 적어도 두 종류가 있다. 하나는 철학적 진실인데, 이는 합리적이고 추상적인 연역적 방법을 통해 확립할 수 있다 (Arendt, 1977, p. 233). 또 다른 진실은 사실적인 것으로서, ‘1914년 8월 4일 독일이 벨기에를 침범했지, 그 반대가 아니다’는 종류의 명제의 속성이다. 이런 사실적 진실에 대해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겠지만, 진실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여기에서 아렌트가 문제 삼는 것은 정치가 진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정치 영역에서 진실 주장은 흔히 폭압

---

3) 셋슨(Schudson, 2009)은 ‘진실다움의 시대에서 사실적 지식’이란 글에서 아렌트가 ‘진실과 정치’에서 제시한 논점을 소개한 바 있다. 그는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제도인 사법부와 학계야말로 진실을 다룰 수 있는 영역이라는 아렌트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언론도 ‘진실을 다루는 제도’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언론을 진실을 다루는 제도로 끼워 넣는 일이 온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슨은 끼워 넣기를 정당화하기 위해, (1) 이전 전문적이며 분석력을 갖춘 언론이 등장했으며, (2) 인터넷 등 기술의 발전으로 언론의 정보 추구 능력이 강화됐으며, (3) 정부 내에도 진실을 추구하는 감찰관 제도 등이 있다는 관찰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현대 언론은 리프만이 비판적으로 보았던 시대의 언론과 사뭇 다르다는 것이다. 그러나 셋슨마저도 언론이 홀로 진실을 확립할 수 있다고 기대한 것 같지는 않다. 그는 언론이 자만스럽게 진실을 주장하기보다 진실 앞에서 겸손하게 ‘묻고 듣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다.

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한다. 일단 정치 영역에서 진실은 ‘타당성 주장을 하는 양식 속에서(in their mode of asserting validity)’ 의견에 대립하는 것으로 설정된다(p. 239). 이런 방식으로 다양한 의견의 형성과 의견 간 조율과 조정이 필수인 정치 영역에서, 진실을 주장하는 일은 흔히 의견 교환과 논쟁을 가로막고 권력의 관점에서 최종적인 진실을 강요하는 일 이 된다(pp. 241-242).

아렌트는 진실이 아닌 의견이야말로 정치 영역의 핵심 자원임을 분명히 한다. 정치적 현실은 누구에게나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기 마련이기 때문에, 의견의 담지자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 소크라테스에게 의견(doxa)이란 ‘나에게 그렇게 보이는 것(dokei moi)’을 뜻한다고 한다(Arendt, 1990, p. 80). 모두가 공통의 정치적 현실을 접할 수 있겠지만, 그 현실이 모두에게 같은 양식으로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누구도 타인이 의견을 묻고 답하기 전까지 그의 의견, 즉 ‘그에게 그렇게 보이는 진실’을 확인할 도리가 없다. 결국 정치 영역에서 타당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물어보고, 논의를 통해서 같은 의견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의견이 있다면 좁혀 나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일을 도외시하고 진실만을 주장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야말로 실은 자신의 의견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자들이라고 한다.

아렌트는 정치 영역에서 진실이 불가능한 까닭을 인간의 조건에서 찾았다. 그는 인간의 일반적 능력과 그에 조응하는 인간의 조건을 노동과 생활, 작업과 세계, 그리고 행동과 다원성으로 구분해서 제시했다 (Arendt, 1958). 노동은 생계유지를 위한 활동으로서 삶을 영위하는 반복적 행동을 의미한다. 노동의 조건은 세속적인 무의미함이라고 할 수 있는 생활의 과정이다. 반면, 작업은 자연을 대상으로 삼아 인공적인 세계를 창출하는 행동인데, 이는 효용과 가치를 창출하면서 동시에 세계를 물화하는 활동이다. 세 번째, 인간의 행위는 노동과 작업과 근본적으로

다르다. 왜냐하면 이는 다른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즉 ‘공적 영역(public space)’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이며 집단적인 행동이기 때문이다. 정치적 행위는 다른 ‘행동하는 삶(vita activa)’과 다른 조건, 즉 ‘인간은 모두 다르다는 점에서 같다’는 조건에서 나온다(Arendt, 1958, p. 8). 이를 다원성의 조건이라 한다. 이 조건 때문에 인간의 말과 행동은 타인과 소통을 위한 것이 되며, 의견의 형성과 전달을 위한 것이 되며, 공통적인 삶의 기획을 만들기 위한 것, 즉 정치적인 것이 된다.

하버마스(Habermas, 1977)는 아렌트가 제시한 권력 개념이 베버가 설정한 권력, 즉 타인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삼는 권력과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다. 아렌트는 타인의 의지에 반해서 그의 삶을 지배하는 힘을 권력이라 부르지 않고 강제력이라 했다. 아렌트가 생각하는 권력이란 ‘다원성의 조건’에서 소통을 수행한 결과 얻은 공통의 의지의 형성이다. 즉, 권력이란 지배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간주간적 관계의 형성과 유지라는 목적 그 자체라는 것이다. 하버마스는 아렌트의 권력 개념을 ‘소통적 권리 개념(communication concept of power)’이라 칭했다(p. 8). 아렌트에게 권리이란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공통 의지를 산출하는 힘’을 뜻하는데, 이런 소통적 권력은 말이 공허하지 않고, 행동은 잔혹하지 않은 곳에서 현실화한다(Arendt, 1958, p. 200).

하버마스가 보기에도 아렌트의 소통적 권리 개념에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 그것은 소통적 권리가 왜 정당한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소통을 한다고 해서 의견이 저절로 진실이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단순히 의견 교환을 한다고 해서 저절로 합의가 산출되는 것도 아니다. 다만 의견을 교환하는 가운데 “약속을 하고 준수하는 책임 있는 주체의 능력”에서 의견의 힘이 발휘될 것을 기대할 수 있을 뿐이다(Arendt, 1958, pp. 243-245; Habermas, 1977, p. 23). 그런데 이런 약속이나 계약과 같은 규범을 만드는 행위는 실천적 대안이 될 수 있을 뿐, 이론적인 정당화를 해내지는 못한다.

하버마스는 결국 아렌트가 제시하지 못한 소통적 권력의 정당성 근거를 담론 윤리(discourse ethics)를 통해서 밝혔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보편적인 소통의 윤리이기에 언론 윤리도 포함할 수 있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가 언론 윤리에 갖는 함의를 논의하기 전에, 그의 민주주의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하버마스는 민주주의론을 전개하면서 정치적 의견 교환이 바로 정치적 권력을 정당화하는 근거임을 제시했는데, 이런 식의 설명이 결국 다수결 원칙에 근거한 오래된 결의주의적 민주주의 이론을 보완하고, 동시에 언론 윤리의 원리를 뒷받침한다. 왜냐하면 하버마스의 민주주의론은 사실이나 진실과 같은 어떤 형이상학적 전제를 도입하지 않고도 정치 체제를 정당화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를 이용해서 언론이 윤리적으로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버마스(Habermas, 1996)는 〈사실성과 타당성〉에서 근대 법치국가의 윤리가 인권과 국민 주권, 도덕적 규범과 법적 규범, 그리고 실정법과 법의 타당성 등과 같은 불완전한 대립 구도 속에서 동요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리고 이런 동요를 극복할 수 있는 원동력이 현대 사회에 내재함을 주장했다. 공론장의 소통적 합리성이 바로 그 원동력이다.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소통은 의견을 형성하고 의지를 산출하는 실천적 행위인데, 이는 규범적 함의를 갖는다. 법과 제도의 정당성을 산출하는 근거가 되는 것이다. 예컨대, 투표, 배심원 판결, 정책 토론 등 형식적 절차주의를 따르는 제도 내에서 이루어진 의사소통을 통해서 정치적 행위는 정당성을 얻는다. 정당성을 얻는 정치적 행위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법을 제정하고 제도를 확립하는 일이다.

하버마스가 강조하는 점은 느슨하게 조직된 시민적 의견 교환과 담론적 상호작용에서도 이런 의사소통 합리성이 기본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일상적 상호작용에서도 의사소통 합리성을 구현한 규범을 따르는 행위를 할 때 의견과 의지가 구속력을 갖는다. 그런데 일상적인 시민

적 상호작용 행위를 정당한 권력이나 권위로 전환하는 담론 행위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공론장이다. 제도권의 정책 토론회나 주류 언론의 보도 행위는 물론 비제도적인 의견 표명과 시위 발언, 그리고 비정치적인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적 토론 등이 모두 공론장을 구성한다. 이렇게 유동하고, 기초가 부실해 보이며, 경계가 모호한 듯해 보이는 공론장의 소통 행위는 민주적 권력 그 자체를 정당화하는 배경이 된다. 공론장의 소통 행위가 어떻게 권력을 정당화하는가? 하버마스에 따르면, 민주주의 정체에서 법의 지배가 가능한 이유는 법이 절차적 패러다임을 따라 시민의 의지를 결합한 입법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즉, 시민권자가 법의 저자이면서 동시에 수법자라는 논지에서 법의 지배가 가능하다. 그런데 시민이 직접 참여하지 않는 입법 과정이 시민의 의지를 대변한다고 상정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그 입법 과정이 왜곡되지 않는 공론장의 여론 수렴 과정을 반영한다고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Habermas, 1996, p. 369). 즉, 공론장 내에서 여론 형성이 입법 과정의 배경이자 근거가 될 때, 그리고 바로 그런 때에만 그런 입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법이 타당성을 갖추게 된다.

그러나 현실의 공론장에서 발생하는 소통이 오류와 왜곡, 전략적 행위와 기만 등에 취약하다는 점을 생각해 보면, 하버마스가 제시한 정당화 논지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공론장의 모든 의사소통이 현실적으로 정당한 권력을 산출하는 역할을 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과연 공론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의사소통은 합리성을 갖추어 민주적 타당성을 산출하는가? 권위주의적 정체는 물론 민주적 정체에서도 공론장의 왜곡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하버마스가 제시한 정당화 방법은 이상적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그러므로 공정성, 평등성, 개방성, 타당성 등과 같은 의사소통 합리성이 훼손된 조건에서 이루어진 여론을 따라 만들어진 법이라면 당연히 타당성을 기대할 수 없다. 또한 아렌트가 비판적으로 제시한 정치영역에서 진리 주장이

행사할 수 있는 폭넓은 지배까지 함께 고려하면, 공론장에서 이루어지는 담론적 상호작용이 현실적으로 이룩할 수 있는 성과는 매우 제한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하버마스의 요점은 공론장의 현실적 제약과 별도로 의사소통 합리성이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는 권력의 정당화 기능을 수행한다는 논리 그 자체에 있다. 이 논리는 정합한데, 왜냐하면 의사소통 참여자가 ‘모순을 범하지 않고는 부정할 수 없는’ 의사소통 합리성이 모든 소통의 현실에 전제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사소통 합리성을 배경으로 전제하지 않으면, 현실적 소통의 오류와 왜곡은 물론 기만과 아이러니 등과 같은 문제적 의사소통의 기능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기능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도 없다. 이는 마치 거짓 발언은 진실 개념을 배경으로 삼을 때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다. 즉, 의사소통 합리성이란 모든 경험적 의사소통을 의사소통이라 말할 수 있는 배경적 원리로 작용하기에, 이 개념을 이용해서 경험적으로 왜곡된 의사소통 현실 자체를 개념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요컨대, 하버마스의 이론은 정당한 소통적 질서가 어떻게 가능한지 원리적으로 보여 주면서, 구체적인 현실적 문제점에 대한 ‘반사실적 기준(counterfactual standards)’을 제시한다. 일종의 규범적 이상(regulative ideals)으로 기능한다는 것이다. 이제 그 규범적 이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4. 담론 윤리와 언론 윤리

이 글의 핵심 주장은 전통적인 언론 윤리는 물론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를 정당화하기 위해 ‘담론 윤리(discourse ethics)’ 또는 ‘소통 윤리(communicative ethics)’의 원리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담론 윤리란 하버마스(Habermas, 1979)의 ‘보편적 화용론(universal pragmatics)’,

아펠(Apel, 1990)의 ‘이상적 소통의 공동체 윤리(the ethics of ideal communication community)’, 알렉시(Alexy, 1989)의 ‘일반 합리적 실천 담론 이론(a theory of general rational practical discourse)’ 등이 제시했던 원리들, 즉 경험적 소통의 전제가 되는 합리적 전제를 역으로 추론해서 재구성한 소통 윤리의 원리를 의미한다. 하버마스, 아펠, 알렉시는 모두 개인 주체의 행위를 결정하는 도덕적 근거를 찾는 방식으로 소통에 참여한 개인들이 일상적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준수할 수밖에 없는 원리를 재구성해서 제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여기에서는 하버마스(Habermas, 1990)가 〈도덕의식과 소통 행위(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에서 제시한 담론 윤리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언론 윤리를 논하는 데 담론 윤리를 검토하는 이유는 담론 윤리가 보편적 소통의 합리성을 재구성한 윤리 이론이기에 소통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언론의 윤리도 설명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나는 특히 담론 윤리에 의존해서 전통적 언론 윤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 즉 앞서 말했던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집착을 극복하고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도 정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 전통적인 언론 윤리는 ‘객관주의 이념(ideal of objectivism)’을 직업적 규범의 수준을 넘어 최상위 가치로 확립하는 가운데(Maras, 2013; Schudson & Anderson, 2009), ‘참 또는 거짓’의 문제를 전면에 내세워 ‘옳음과 좋음’의 문제를 덮어쓴 혐의가 있다. 사실과 진실이 언론의 모든 것이 아니며, 실은 사실에 근거해서 얼마든지 나쁜 보도를 할 수 있다. 즉, 사실에 기초해서 보도했다고 해서 편향적이지 않거나, 불공정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sup>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

4) 하버마스(Habermas, 1979)는 모든 의사소통은 그 주제 영역에 따라 참과 거짓, 옳음과 그름, 진정함과 그렇지 않음과 각각 관련한 (가) 인지적, (나) 상호 작용적, (다) 표현적 소통 양식으로 구분되는 ‘타당성 요구(validity claims)’를 담고 있다고 제시했다. 개별 소통 행위에 대해서 구분되는 타당성 요구가 가능하기에, 소통의 주체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 제기된 서로 다른 타당성 요구에 별개로 응답해야 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 추론은 언론의 윤리적 소통에도

고 사실 보도의 과제를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가운데 불편부당성이나 공정성 과제를 뒤로 돌리거나, 철저하게 추구하지 않는 자세를 취하기도 했다. 특히 공정성 과제에 대해 맥락에 따라 사안을 달리 구성해서, 달라진 사안에 다른 원칙을 적용하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평가자에 따라 원칙의 적용이 달라지는 것을 그대로 둔다. 이 때문에 과제는 인정하되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일이 태반이다. 그러나 이런 추상성, 다원성, 그리고 해석 가능성 등은 윤리적 성찰과 탐구의 시발점이 되어야지 종착점이 되어선 안 된다. 언론의 공정성에 대한 요구를 포함한 언론 윤리의 과제는 다원적 이해관계의 충돌과 해석의 다양성을 전제로 삼아야지, 그것을 대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는 다원적인 이해관계는 물론 그에 대한 해석을 중재하기 위한 절차적 규칙을 도출하기 위한 원리를 제공한다.<sup>5)</sup>

하버마스(Habermas, 1990)는 칸트적 방법론적 전통을 따르면서, 칸트의 독백적 도덕 체계의 구성 방법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일

---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이준웅, 2010).

5) 롤즈(Rawls, 1971)가 제시한 '공정으로서 정의'란 개념이 또 다른 원리가 된다. 롤즈에게 공정성이란 다원적 사회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절차적 공정성에 따른 원칙을 만들어 냄으로써 보장되는 것이다. 요컨대, 그는 공정성을 게임 참여자들이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동의해야 하는 규칙과 같은 것으로 본다. 공정한 절차에 따른 결과가 완전하게 모두를 만족시키란 보장은 없지만, 게임에 참가해서 부당한 결과를 피하고 싶은 참여자들은 결국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즉 '최초의 상황(initial situation)'에서 공정한 규칙을 제정하고자 한다. 롤즈는 공정성의 절차적 특성을 도출하는 사고 실험의 장치로 이를바 '원초적 입장(original position)'을 제시한다. 원초적 입장에 처한 자들이 최초의 규칙을 만들 때, 해당 규칙의 결과가 초래할 가능성을 검토해서 이를바 '최소극대화(maximin) 전략'을 사용한다고 보았다. 즉, 최악의 결과가 나올 것을 고려했을 때 그나마 그중에서 최선의 결과를 선택할 수 있는 전략을 사용한다. 이 논지를 따라 그는 원초적 입장의 참여자가 결국 정의의 두 원칙들, (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과 (나) 차등의 원칙을 채택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롤즈가 제시한 '공정으로서 정의' 개념은 경험에 초월적이며 상호적인 방식으로 규칙의 제정에 합의하는 논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와 상통하는 점이 있다. 그러나 규칙에 대한 합의를 산출하는 힘이 소통의 합리성이 아닌 선택적 행위의 합리성에 기초한다는 차이가 있다.

종의 다자가 수용할 수 있는 원리를 먼저 제시한다. 그것은 조지 허버트 미드(G. H. Mead)의 ‘이상적 역할 수행(ideal role-taking)’이란 개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편화 원리(the principle of universalization: U)라 한다. 한 규범이 그 규범을 따르는 모두에게 타당하게 수용되기 위해서는 해당 규범을 보편적 법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보편성이란 “모든 이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을 위해 모두가 그 규범을 준수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관련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다자간 행위를 지배하는 규범이란 복수의 상호작용적 참여자를 상정하고 있으며, 그들이 해당 규범을 따를 때 초래하는 모든 결과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보편적으로 정당한 담론 윤리의 원리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어떤 규범이 타당하다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자들이 실천 담론의 참여자의 자격으로 그 규범에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D).”

담론 윤리의 원리를 적용해서 논변 행위의 참여자가 모순을 피하지 않으려면 인정할 수밖에 없는 화행적 논변의 전제들(the pragmatic presuppositions of argumentation)을 구성해 나갈 수 있다. 하버마스 (Habermas, 1990, pp. 87-89)는 알렉시(Alexy, 1990)가 제시한 도덕적 담론의 규칙을 원용해서 (가) 논리적-의미론적 수준, (나) 논변의 절차적 수준, (다) 논변의 과정적 수준에 해당하는 규칙을 재구성해서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논리적-의미론적 수준은 “어떤 발언자도 모순되게 말해선 안 된다(1.1)”는 논리적 정합성 규칙과 “대상에 대한 용어를 일관되게 사용해야 한다(1.2)”와 같은 의미론적 규칙을 포함한다. 절차적 수준에는 “모든 발언자는 자신이 진심으로 믿는 바를 말한다(2.1)”는 진정성 규칙과 “논의의 대상이 아닌 명제나 규범에 대해 토론하고 싶으면 정당한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2.2)”는 설명 책임의 규칙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과정적 수준에는 “모든 발언과 행위 능력이 있는 자는 담론에 참여

할 수 있다(3.1)”는 참여의 규칙, “누구나 담론에 주장을 더할 수 있고, 다른 주장에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태도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다(3.2)”는 발언의 규칙, 그리고 “어떤 발언자도 참여(3.1)와 발언(3.2)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3.3)”는 자유의 규칙 등이 있다.

이런 담론의 규칙은 연역적 방법론을 적용해 확장이 가능하다. 규칙을 적용하는 윤리 영역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과제에 따라서, 앞서 정당화한 원리와 규칙으로부터 후속적인 명제를 도출해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알렉시(Alexy, 1989)는 〈법적 논변 이론〉이란 책에서 이런 방법론을 적용한 바 있는데, 특히 그가 제시한 ‘논변 부담의 할당 규칙(rules for allocating the burden of argumen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규칙들은 ‘누군가 다르게 대우할 때에는 그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거나 ‘사전 발언과 무관하게 자신의 태도나 요구를 새롭게 소개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이유를 제시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논변의 상대방이 언제나 제시할 수 있는 ‘왜’라는 의문과의 심에 답해야 한다는 규범에서 이런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고 한다(p. 195). 그는 이렇게 도출한 규칙들이 현실 비판의 도구로 기능할 수도 있고, 현실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할 수도 있고, 현상을 설명하거나 이상을 규정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담론 제도화의 한계로 설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Alexy, 1990, p. 180).

우리는 하버마스와 알렉시 류의 담론 윤리를 언론 윤리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언론 윤리에 포함되는 모든 규칙은 보편화의 원리(U)를 따라야 하며, 이에 따라 “어떤 규범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그 규범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관여자들이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그 규범이 타당하다고 동의해야 한다”는 담론 윤리(D)의 원리를 적용해서 언론 윤리의 실천적 규칙을 도출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규칙은 언론의 실행 윤리에 따른 논리적 정합성 규칙, 의미론적 규칙, 진정성 규칙, 설명

책임의 규칙, 참여의 규칙, 발언의 규칙, 그리고 자유의 규칙 등이 될 것이다. 생각해 보면, 아이거스의 〈좋은 뉴스, 나쁜 뉴스〉를 포함한 언론 윤리 교과서에 담긴 규범적 명제들도 담론 윤리의 원리를 적용한 언론 윤리의 규칙과 내용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언론 현장의 구체성에 따라 필요한 현실적 변용이 있을 뿐이다. 언론 현실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언론 윤리의 규칙들은 언론 취재·제작·보도의 정당성을 보장하거나, 현실 비판의 기준이 되거나, 이상적인 언론 행위를 규정하는 내용을 구성할 때 그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 내용은 담론 윤리의 규칙들을 따를 것이다.

## 5.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의 특수성과 일반성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를 논의하기 전에, 디지털 언론 윤리의 과제가 전통적 언론 윤리의 과제와 얼마나 다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뉴스의 생산, 유통, 이용 등 전통적 언론의 그것과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는 전통적 언론 윤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전제가 일반적인데, 과연 그런지 검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리오르단(Riordan, 2014)이 〈정확성, 독립성, 불편부당성〉에서 제시한 견해가 대표적으로 변화론을 따른다.

리오르단은 디지털 언론은 언론 윤리에 다르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전통적 언론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들이 식견 있는 참여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는 목적에 충실했다면, 디지털 언론은 그보다 실용적 접근을 한다는 것이다. 리오르단은 워싱턴 포스트 편집자의 말을 빌어서 디지털 언론은 ‘정직하고’, ‘신속하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윤리적 책임을 수행한다고 했다. 여기에서 정직하다는 용어는 디지털 뉴스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언론인이 인정함을 의미하

고, 신속함은 말 그대로 빠르게 전달한다는 뜻이다. 민주적이라 함은 많은 사람의 개입에 의해 제작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다. 비록 실수나 오보를 내기도 하지만,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결국에는 취재와 제작의 연결망으로 이루어진 다수의 관련자들, 즉 기자, 편집자, 정보원, 독자 등의 개입을 통해서 뉴스를 형성해 간다는 것이다.

리오르단이 제시한 정직성, 신속성, 민주성이라는 디지털 윤리의 핵심 가치가 객관성, 공정성, 불편부당성 등 전통적 언론 윤리의 가치와 범주적으로 다른 것은 맞다. 그러나 이런 가치들이 수행하는 기능과 역할이 전통적 언론 윤리 가치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무엇보다도 디지털 시대라고 해서, 언론의 기본적 기능, 즉 민주주의 정당화를 위한 여론 형성 기능이 달라질 것이라 예상하기 어렵다. 칼손(Karlsson, 2011)이 제시한 논의를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전통적인 언론의 진실성 추구가 ‘정확한 정보를 수용자에게 전달할 것’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면, 디지털 언론은 투명성과 이용자 참여를 활용하는 전략을택한다. 그러나 디지털 언론의 투명성과 이용자 참여가 달성하려는 목표가 다른 것은 아니다. 필립스(Phillips, 2010)가 디지털 언론사들이 서로 베끼는 관행을 극복하기 위해 제시한 ‘투명성’ 규범도 그렇다. 그녀에게 투명성이란 결국 언론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확성과 진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론적 개념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언론 윤리가 변했다는 주장이 무게를 가지려면, 이 주장의 전제가 되는 언론 현실의 변화가 언론 윤리에 대해 갖는 함의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언론 현실이 변화했다 하더라도 언론 제도의 과제는 변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달그렌(Dahlgren, 2009)은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론 양식이 등장했다고 해서 언론의 과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그는 언론이 상대하는 현실이란 원래 ‘다중 인식적 질서(multi-epistemic order)’를 지니는데, 디지털 언론의 지배적이 되면서 새로운 현실적 요인이 등장하고 따라서 질서 내부의 혼

란과 불일치의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다중 인식적 질서가 제기한 과제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달그렌의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언론 시대에 언론 현실의 변화가 새로운 언론 윤리의 원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불편부당성과 공정성 개념이 그렇다. 리오르단의 보고서에 등장하는 〈가디언〉 독자부 편집자인 크리스 엘리엇(Chris Elliot)은 전통적인 객관성이나 불편부당성을 믿지 않는다고 공언한다(Riordan, 2014, p. 39). “〈가디언〉은 진정한 불편부당성과 같은 것이 있다고 믿지 않으며, 캠페인 저널리즘과 같이 강력한 저널리즘을 믿는다”고 말했다. 엘리엇은 불편부당성에 대한 대안으로 ‘공정함’을 말한다. 그가 말하는 공정성이란 독자에게 개방되어 있고, 투명한 절차를 따르는 것을 공정성이라 부를 수 있는데, 이 원칙에 따라 새로운 윤리적 도전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사례 역시 언론 윤리의 핵심 가치를 ‘불편부당성’으로부터 개방성과 투명성으로 변경’해서 제시할 뿐, 이런 가치를 적용해서 해결해야 할 윤리적 과제 자체는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 준다. 전통적 가치라 제시된 불편부당성과 새로운 가치인 것처럼 제시된 공정성은 모두 하며마스가 제시한 담론 윤리의 ‘절차적 수준’에 속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두 가치 모두 앞서 알렉시가 제시한 논변의 정당화를 위한 ‘논변 부담의 할당 규칙’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 있다.

퀴츠 미디어의 국제부장인 기드온 리치필드(Gideon Lichfield)이 제시한 관점도 유사하다(Riordan, 2014 재인용). 그는 퀴츠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도 사실성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단지 그 구체적인 방법이 전통적 언론과 다를 뿐이라고 언급한다. 전통적 언론사에 있는 사전적 사실 검증 작업은 없지만, 사후적으로 기사를 교정해 나간다는 점에서 사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며, 따라서 근본적으로 달라진 점이 없다고 한다. 리치필드는 또한 “수용자들이 공정함을 기대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성은 불편부당성이나 중립성 또는 객관성과 미묘하게나마 다른 것

이다. (...) 따라서 원칙은 언제나 상대방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이다. 만약 논변을 전개하고 싶다면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밝히고 동시에 그 주장이 약하거나 반대 주장은 무엇인지를 언급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p. 44)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전제된 언론 윤리의 가치와 규칙이 뭔지 생각해 보면, 담론 윤리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절차성, 비례성, 공정성 등과 같은 것들이며, 이는 전통적 언론 윤리가 강조해 온 가치 및 규칙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의 가치가 전통적 언론 윤리의 가치와 다르다는 주장을 전제로 삼아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언론 윤리의 목록을 만들고,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일은 요점이 불분명하다. 언론 현실은 달라졌지만, 언론의 사회적 역할, 언론 윤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 그리고 적용 가능한 언론 윤리의 원리가 달라졌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 검토하듯이, 담론 윤리를 적용해서 언론 윤리를 재구성해 보면,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의 작동 방식은 디지털 뉴스 생산 및 유통 과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언론 윤리의 규범을 적용하는 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6. 새로운 시대, 오래된 원리

새로운 디지털 뉴스의 현실은 전통적 언론 현실과 다르다. 특히 이 글의 문제 제기에서 거론한 (가) 뉴스 주기의 해체되고 있으며, (나) 경계적 내용을 제공하는 정보 제공자가 등장했으며, (다) 알고리듬 생산으로 언론의 윤리 주체가 모호해진다는 것 등이 그렇다. 이 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현실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담론 윤리적 원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하겠다.

## 1) 뉴스 주기의 해체와 '점근적 사실성'의 대두

디지털 시대의 뉴스는 언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흐름으로서 뉴스'가 됐다. 뉴스의 흐름에 기여하기 위해 개별 뉴스 생산자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도 끊임없이 뉴스를 쟁신해서 전달한다. 다층적인 플랫폼과 무수한 채널을 통해서 전달되는 뉴스는 주제나 영역별로 보면 파편적이지만, 검색과 포털을 이용해서 보면 종합적으로 재구성이 가능하다. 흐름에 대비한 쟁신, 파편화에 대비한 종합적 구성 등 모순적 계기들이 서로 충돌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뉴스의 사실성을 만들어 낸다. 이런 현실을 두고, 사실성의 해체와 새로운 사실성이 등장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으며, 그중 새로운 사실성의 일종으로 '점근적 사실성(asymptotic factuality)'이란 개념을 제시하기도 한다. 뉴스가 제공하는 '사실'은 어느 한 시점에 고정된 사실에 대한 재현이 아니라, 뉴스 흐름이 점진적으로 쌓여서 종국적으로 사실적 현실을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대체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뉴스의 사실성을 이렇게 본다고 해서, 사실성과 관련한 언론 윤리가 근본적으로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

뉴스의 사실성과 관련한 윤리적 과제는 '사실 확인', 즉 검증(verification)이다(Kovach & Rosenstiel, 2014). 전통적 언론 윤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절차적인 규범을 채택해 왔다. 예컨대, 기자가 직접 관찰한 사실을 제시하거나, 정부의 문서나 권위 있는 전문가의 증언 등과 같은 정보원을 활용하거나, 다른 언론사를 인용한다. 아니면 언론 스스로 자료를 생산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개별적 방법이 갖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두 개 이상의 독립적 정보원을 사용한다는 규칙을 도입하기도 했다. 그런데 언론의 사실성이란 과학적 보고서나 학술 논문이 추구하는 사실성에 비하면 방법도 다르고 역할도 다르다. 과학의 사실성은 과학적 방법론에 의존하지만, 언론의 사실성은 느슨하게 정의된 '언론의 직업 규범'을 따른다. 과학의 사실성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언론의 사실성이란 공론장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민주적

법적 질서를 간섭하는 데 기여한다는 별도의 목적을 갖는다.

점근적 사실성은 언론 윤리에 특별한 고려를 한 가지 더한다. 사실성 평가의 단위가 개별 '기사'가 아니라 '흐름', 즉 연결성을 갖는 복수의 기사들이 사실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변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뉴스의 사실성 또는 정확성을 평가하는 방식은 개별 기사를 놓고 이루어졌다. 개별 기사가 사실 주장의 근거를 담고 있는지, 그리고 그 근거가 기사의 사실 주장을 얼마나 뒷받침하는지 등을 평가했다. 이 특성은 공정성이나 불편부당성과 같은 윤리적 가치를 확인할 때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기사에 복수의 독립적 정보원을 담는지, 복수의 견해를 왜곡되지 않게 제시했는지,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부당하게 억누르지 않았는지 등을 평가했다.

단위 기사가 아닌 흐름이 지배적인 디지털 뉴스 시대에 언론 윤리는 평가의 단위가 달라진다. 사실성 확립을 위한 방법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약한 정보원에 근거해서 약한 사실 주장을 일단 제시한 후에, 취재를 보강해서 추가적으로 근거를 확보해서 사실성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뉴스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심지어 정보원과 근거를 확보하면서, 주장을 바꾸거나 아예 반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보도할 수도 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나 검색엔진을 활용해서 다양한 사실 근거는 물론 의견과 해석도 병렬적으로 제시하는 뉴스를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서 오래된 자기 기사의 사실 주장을 검증하고, 다른 언론사의 사실성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디지털 시대 언론의 '점근적 사실성'에 대처하기 위한 윤리적 규칙은 절차적인 규범을 따라야 한다. 앞서 제4장에서 제시한 담론 윤리의 원리를 언론에 적용해서 '새로운 사안을 제시하려면 그 정당한 이유를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 책임의 규칙을 채택할 수 있는데, 이는 디지털 시대에 뉴스 제작에 강력한 윤리적 합의를 갖게 된다. 끊임없이 간섭하는 뉴스 시대에는 개별 기사의 완성도도 중요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보도

한 기사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실에 대한 충실성의 관점에서 보아서 점근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느냐가 평가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 연속한 기사가 사실을 향하는지 여부가 언론사와 기자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고, 마찬가지로 언론사와 기자들이 윤리적 이의 제기를 받았을 때 응답하고 설명해야 할 책임 사안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언론은 개별 기사가 얼마나 완결적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개별 기사의 완성도를 넘어서 사실에 충실한 뉴스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느냐가 관건이 된다. 사실 성과 관련한 윤리적 책임은 물론 도덕적 ‘훌륭함’은 더 이상 개별 기사의 완성도에 제한되지 않는다. 윤리적 평가 대상인 ‘기사’를 검토하는 식보다, 윤리적 책임의 당사자인 ‘기자’나 ‘언론사’가 왜 그런 기사를 그런 방식으로 써 왔는지 검토해야 한다.<sup>6)</sup> 이렇게 보면, 점근적 사실성의 등장을 새로운 언론 윤리 과제의 등장으로 볼 수 없고, 새로운 언론 윤리 원칙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할 도리는 더욱 없다. 점근적 사실성의 대두로 언론이 사실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 선택지가 많아지고, 사실성을 강화하기 위해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의 범위도 넓어진다. 디지털 뉴스 시대에 사실성은 변화했다기보다 새로운 방식으로 강화되는 것이다. 디지털 시대의 사실성은 전통 언론 윤리가 보였던 ‘사실과 진실에 대한 강박에 가까운 집착’이 아닌 중장기적이고 유연한 점근적 사실성의 달성이라는 방식으로 실현된다.

## 2) 경계적 내용의 뉴스화

뉴스라고 부르기 어려운 오락, 의견, 광고 등 내용물을 뉴스처럼 포장해

---

6) 이는 언론의 실천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핵심의를 갖는다. 지금까지 일류 언론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얼마든지 훌륭한 ‘개별 기사’를 생산할 수 있었다. 그러나 뉴스 평가의 단위가 달라지면서 이들이 훌륭한 뉴스의 흐름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성이 줄어든다. 능력과 자원을 갖추지 못한 언론사가 고품질 뉴스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서 제공하는 언론사 또는 유사 정보 제공자를 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최근 대두한 ‘네이티브 광고’는 광고인지 기사인지 모호한 수준을 넘어서, 언론사가 직접 광고를 제작하고 영업하는 방식을 채택하는데, 이는 전통적인 언론의 정체성을 위협한다. 이른바 ‘가짜 뉴스’도 그렇다. 뉴스와 유사한 형식으로 내용물을 만들어 뉴스처럼 유통함으로써 광고 수익을 노리는 이들이 등장하면서 언론의 신뢰를 낮춘다. 경계적 내용을 뉴스처럼 유통함으로써 언론의 정체성을 공격하고 신뢰를 낮추는 일은 역사적으로 빈번히 발생한 윤리적 과제가 되지만, 또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언론이 경계적 내용을 유통하는 현실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이른바 ‘도덕 전쟁(a moral war)’이다. 언론 윤리에 위협이 되는 실천을 도입한 행위자를 언론이 아니라 낙인찍고, 그들이 만드는 뉴스를 뉴스가 아니라고 비판하면서 경계 밖으로 내침으로써 언론의 핵심 가치를 지키는 방법이다. 예컨대, ‘네이티브 광고’를 기획해서 영업하는 언론사를 진정한 언론이 아니라고 비판하고, ‘가짜 뉴스’를 유통한 유사 정보 제공자를 가짜 언론사라 규정하고 비판하는 식이다.

그러나 ‘도덕 전쟁’은 과거에도 성공적인 적이 별로 없으며, 디지털 뉴스 시대에는 더욱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 무엇보다도 언론은 원래 경계가 불분명한 채로 제도를 유지해 왔다. 언론이란 무엇이며, 뉴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언론인이란 누구인지 엄밀한 규정을 내리지 못할 정도로 다양한 변종이 출현했으며, 이런 느슨한 경계 설정 때문에 언론의 다종 다양한 시도가 가능했다. 예컨대, 19세기 초 미국 언론을 지배했던 정론지를 대체한 대중적 상업신문은 과도한 광고 영업으로 정론지로부터 ‘약장수’라 비판받았지만, 대중적 상업신문은 결국 언론의 사업 모형을 사실상 결정한 광고 수익 모형을 제도화하는 데 성공했다(Stephens, 2007/2010). 또한 대중적 상업신문들은 경쟁하면서 ‘권위지’와 ‘대중지’로 분화하는 과정에도 ‘도덕 전쟁’이 등장했지만, 이런 다툼은 현대 언론의 모순적 정

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을 뿐이다(Schudson, 1978). 따라서 디지털 뉴스 시대의 수많은 내용 생산, 유통, 이용 방식의 등장과 그에 따른 언론의 문화를 ‘진짜 언론 대 가짜 언론’ 또는 ‘좋은 언론 대 나쁜 언론’이라는 도식을 적용해서 진짜 언론과 좋은 언론을 가려낼 수 있다고 믿는 생각은 순진하다.

경계적 내용을 뉴스처럼 제공하는 사업자가 만연한 시대에, 어떤 사업자라도 ‘언론이라면 마땅히 따라야 할 보편적 규칙을 채택하는 데 참여한 후, 그 규칙을 따르느냐’가 관건이 된다. 어떤 사전에 정한 특성을 갖추었다고 해서 언론사가 되거나 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언론사와 함께 윤리적 규칙 형성 과정에 참여해서 채택한 윤리적 규범을 스스로 따르느냐 마느냐가 중요해진다. 예컨대, ‘네이티브 광고’나 ‘가짜 뉴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진짜 언론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은 부차적인 일이 되고 만다. 뉴욕타임스나 가디언과 같은 언론사가 네이티브 광고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언론이 아닌 다른 종류의 사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언론은 다음과 같은 보편적 윤리 규범을 스스로의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담론 윤리에서 언론 윤리의 규칙을 도출해 보면, 언론의 정체성에 대한 논란에서 벗어나 언론 활동의 윤리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구체적으로, 과정적 수준의 담론 윤리 규칙을 적용하자면, ‘모든 뉴스 제공 능력이 있는 자는 언론 행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참여의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누구나 당대 뉴스에 새로운 기사를 더할 수 있고, 다른 뉴스에 대해 문제 제기할 수 있고, 자신의 입장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다’는 발언의 규칙, 그리고 ‘어떤 뉴스 제공자도 참여 발언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데 방해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자유의 규칙을 따를 수도 있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 윤리의 규칙을 형성해서 따르는지 아닌지 여부가 중요해진다.

결국 디지털 뉴스 시대에 유사 언론 행위자가 증가하면서, 언론 윤리의 적용 대상은 확장한다. 다만 윤리적 판단의 방식이 ‘언론이냐 아니

냐와 같은 도덕 전쟁의 양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미 앞서 논의했듯 이 개별 기사가 아닌 뉴스 흐름 전체가 윤리적 평가의 대상이 되며, 개별 뉴스 제공자뿐만 아닌 유사한 경계적 내용 제공자와 뉴스 플랫폼 사업자 전체가 언론 윤리 규칙 형성의 참여자가 된다. 즉, 더 많은 윤리적 주체가 등장한다. 이렇게 된다고 해서 언론 윤리 평가 및 판단의 구조적 조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이해관계자가 많아지고, 관련된 이해관계의 복잡성이 증가할 뿐이다. 이해관계자 간 상호작용적 규범을 대상으로, 상호주관적 판단에 의해, 합리적으로 수용되는 규범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의 윤리적 노력은 담론 윤리의 원리를 적용하는 한 동일하다. 이해관계자가 아무리 증가하더라도 언론 윤리란 결국 “모든 이들의 이해관계를 만족을 위해, 보편적으로 준수함으로써 기대되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관련자가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보편성의 원칙을 담론적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는 과제는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 3) 알고리듬 생산의 책임성

뉴스 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알고리듬 지배의 확장에 따라 새로운 언론 윤리의 과제가 대두한다. 뉴스 제공자 또는 플랫폼 사업자는 알고리듬 지배 구조(governance by algorithms)를 활용하면서, 언론인들이 ‘편집 의 책임을 미룰 수 있게 됐다’는 관찰이 있다. 알고리듬 지배 구조에는 편집 책임자의 의도가 개입하지 않기에, 인간적 의도와 조정이 개입하면서 발생하는 편향을 배제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간 편집자는 책임의 면책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책임 면책 주장은 이중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첫째, 알고리듬에 따른 뉴스 제작과 관리가 증가한다고 해도 알고리듬 자체를 만들고 관리하는 인간 편집자의 책임성은 그대로 남기 때문이다. 인간의 개입이 최소화된 ‘스스로 배우며 진화하는 인공지능’이 지배적인 조건에서도 애초의 학습 모형의 구성과 학습에 필요한 자료의 배열과 자료 공

급의 일정 조정에서 인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 예컨대, 인간 편집자는 '기계적 판단에 대한 윤리적 알리바이'를 제공하기 위해서 뉴스 발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개입하는 경향이 있다(Ombelet, Kuczerawy, & Valcke, 2016). 둘째, 애초에 알고리듬에 뉴스 제작과 공급을 맡기겠다는 동기 자체가 편성과 편집의 책임성에 대한 사회적 민감성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다. 단지 비용 절감을 위해 알고리듬 뉴스 생산을 도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뉴스 제작과 관리에 인간적 개입으로 인한 편향과 불공정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알고리듬을 투입한 경우도 있다. 결정적으로 인간이 범하는 윤리적 실수를 보완하거나 회피하기 위해 알고리듬 뉴스 생산을 도입하겠다는 결정 자체가 윤리적 판단의 일종이다.

알고리듬 지배 구조에 대한 비판론자 중에는 알고리듬 뉴스 생산이 전통적인 뉴스 생산과 비교해서 더욱 개인화된 이용, 상업적인 활용, 정보 이용의 불평등, 정보 품질의 타락화 등을 조장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다(Just & Latzer, 2016). 그러나 이런 문제점들은 로봇과 알고리듬이 없던 19세기 언론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오래된 것이다. 예컨대, 개인화된 이용이나 정보의 상업적 활용은 알고리듬 뉴스 생산으로 증폭될 수 있는 문제점일 뿐, 알고리듬 뉴스 생산으로 새롭게 대두한 윤리적 문제는 아니다.

알고리듬 지배 구조의 등장은 언론 윤리에 대한 투명성 요구를 강화한다(McBride & Rosenstiel, 2013). 담론 윤리의 관점에서 보면, 알고리듬 지배 구조의 문제는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된다. 명백히 발언자로서 윤리적 책임을 져야 할 언론이 알고리듬을 이용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듯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언론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위한 담론의 생산자로서 윤리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담론 윤리는 진정의 규칙과 설명 책임의 규칙을 통해서 발언자의 내용이 발언자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인지 질문하고, 또한 답변을 요구한다. 모든 윤리적 주체는 이 질문과 답변 요구를 피할 수 없으며, 알고리듬도 마찬가지다. 오히

려 알고리듬 뉴스 생산이 지배적인 조건에서 이런 윤리적 요구는 더욱 엄밀하고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리듬 지배 구조를 활용해서 언론 윤리 과제를 회피하는 행위는 언론 윤리와 관련한 설명 책임 요구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책임이 분산된 알고리듬일수록 분산된 책임의 연결망을 지배하는 기술을 애초에 누가 지배하는지, 그리고 결국 누구의 도움이 되는지 감시의 대상이 되고 또한 폭로될 가능성이 높다. 기술적으로 복잡한 알고리듬일수록 결과의 방향성에 대한 모니터링 요구와 설명 책임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기 때문이다(Diakopoulos, 2015). 또한 알고리듬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 문제가 제기될수록 알고리듬 감시와 검토, 분석과 검증의 방법론도 발전한다. 물론 알고리듬 지배 구조의 불투명성을 이용해서 정보의 통제, 이용자 기만, 책임의 면책을 시도하는 이들은 분명 있을 수 있고, 또한 그런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는 창과 방패의 문제에 가깝다. 더욱 애매하고, 면밀하고, 불투명하게 알고리듬 지배 구조의 통제 논리를 숨길수록 더욱 집요하고, 치밀하고, 투명하게 알고리듬 지배 구조의 문제점을 폭로하려는 대응도 커진다.

## 7. 결론을 대신해서: 언론 윤리 최종 심급으로서 공중

이 글은 전통적 언론 윤리가 과도하게 사실과 진실의 문제에 집착하는 현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언론의 윤리적 기초로 ‘담론 윤리’의 원리를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했다. 전통적 언론 윤리는 (가) 다원적 윤리적 기초 간 모순성, (나) 객관주의 언론 규범에 대한 무기력함, (다) 언론 윤리 최종 판단 근거로서 공익이 갖는 약한 실천적 함의 등으로 디지털 뉴스 시대에 새롭게 떠오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을 보인다는 진단을 제시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먼저 한나 아렌트가 제시한 ‘소통

으로서 권력 개념'을 전제로서 검토했으며, 이를 경유해서 언론은 사실과 진실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서 공론장에서 의견 교환이 갖는 민주적 정당화 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인식에 도달했다. 이런 인식을 기초로 언론은 '담론 윤리'의 기본 원리를 받아들여 윤리적 규칙을 도출함으로써 민주주의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지로 진행했다. 결국 이 글은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를 수용한다면, 전통적인 언론 윤리는 물론 디지털 뉴스 시대에 대두한 언론 윤리 과제도 윤리적으로 타당한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했다.

담론 윤리를 수용함으로써, 디지털 시대에 윤리적 과제를 던지는 새로운 현실들, 즉, (1) 뉴스 주기의 해체에 따른 접근적 사실성의 대두, (2) 경계적 내용에 대한 언론 윤리의 요구, (3) 알고리듬 뉴스 생산에 대한 책임성 부여 등에 윤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답변을 도출할 수 있음을 제시했다. 디지털 뉴스의 현실은 분명 언론 윤리적 관점에서 검토해야 할 새로운 문제적 현실이지만, 해결이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지 않으며, 특히 담론 윤리를 적용한 언론 윤리적 규칙을 적용했을 때 해결 가능한 과제가 된다는 점을 보여 주려 노력했다.

결론을 대신해서 담론 윤리를 적용한 언론 윤리가 제시하는 또 하나의 함의를 논의하려 한다. 그것은 이용자 주권의 문제이다. 이는 '공중의 이익'이 언론 윤리의 최고심급의 결정자라는 전통적 인식과 맞닿은 사안이기도 하다.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언론 인의 윤리 문제를 공중의 타락 문제로 치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컨대, 대형 플랫폼과 다수의 뉴스 채널이 존재하는 시대에 고품질 뉴스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줄고, 오락적이고 자극적인 내용물에 대한 요구가 증가해서 문제라는 식으로 비판하는 것이다. 공격적인 표현물의 유통, 불법적인 내용물의 범람, '가짜 뉴스'의 영향력 증대 등 디지털 뉴스 시대의 해악들은 이용자들이 내용의 품질에 대해 무관심하기에 발생한다는 비판도 마찬가지다.

만약 뉴스 이용자의 특성, 습관, 취향이 자신의 타락의 원천이 된다면, 과연 이는 언론 윤리의 문제를 넘어선 ‘공중의 문제(the problem of the public)’라고 하겠다. 그러나 20세기 초에 유행한 ‘기술 탈주론(run-away technology)’와 결합한 이른바 ‘공중 타락론’에 대해서 뉴이(Dewey, 1927)가 이미 적절하게 대응했듯이, 공중을 연결하는 소통의 연결망은 타락의 원천이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형성하는 자원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문제는 이런 과제를 해결할 윤리적 방법론이 있느냐는 것인데, 이 글은 그러한 방법론을 도출하기 위한 하나의 제언을 제시한다. 언론은 보편적인 담론 윤리의 원리에서 도출한 언론 윤리의 규칙을 자신의 행위에 적용해서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글은 언론이 민주주의에 기여하는 방식은 사실과 진실을 전달해서가 아니라 사실과 진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의 원천을 전달함으로써 의견을 형성하는 데 있다는 주장을 전제로 삼는다. 이 때문에 언론은 민주적 여론 형성을 통해서 정당한 권력의 창출에 기여하지만, 그 방법은 어디까지나 보편적이고, 절차적이며, 다양한 담론 당사자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글에서 나는 보편적이고, 절차적이며, 조정적인 담론 윤리를 원리로 삼아 언론 윤리의 규칙을 도출해서 언론 현실에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이 이런 윤리적 규칙을 스스로 제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그에 따라 통제할 때, 민주주의에 더욱 충실히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디지털 뉴스 시대의 언론 윤리를 하버마스의 담론 윤리 관점에서 시론적으로 제시했기에 한계가 없지 않다. 첫째, 경쟁하는 다른 언론 윤리의 관점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검토하지 못했다. 예컨대, 막스 베버의 전문가 책임 윤리의 관점이나, 베나드 월리엄스의 공동체주의 윤리의 관점에서 디지털 뉴스의 생산과 유통에 대한 윤리적 대안을 재구성해서 제시하고 검토할 수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이런 비판과 보완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둘째, 이 글이 제시하는 핵심 주장을 적용한 구체

적인 사안 분석을 제공하지 못했다. 디지털 뉴스 제공자 간 속보 뉴스 경쟁으로 인한 오류, ‘가짜 뉴스’ 등장에 따른 허위 정보의 유통, 알고리듬 뉴스 생산이 초래하는 불공정성과 편향과 관련한 사안을 담론 윤리의 원리에서 도출한 규칙으로 비판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이 역시 후속 연구에서 체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참고 문헌

이준웅 (2010).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문제. 〈한국언론학〉, 54권 2호, 187-209.

Alexy, R. (1989). *A theory of legal argumentation*.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Alexy, R. (1990). A theory of practical discourse, In S. Benhabib & F. Dallmayr (Eds.), *The communicative ethics controversy* (pp.151-191). Cambridge, MA: MIT Press.

Anderson, C. (2013) Towards a sociology of computational and algorithmic journalism. *New Media & Society*, 15(7), 1005-1021.

Apel, K. O. (1990). Is the ethics of the ideal communication community a utopi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thics, utopia, and the critique of utopia, In S. Benhabib & F. Dallmayr (Eds.), *The communicative ethics controversy* (pp.23-58). Cambridge, MA: MIT Press.

Arendt, H. (1958). Human condition.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rendt, H. (1977). Truth and politics. In H. Arendt, *Between past and future* (pp. 223-259). London, UK: Penguin.

Arendt, H. (1990). Philosophy and politics. *Social Research*, 57(1), 73-103.

Bakker, P. (2012). Aggregation, content farms and Huffinization. *Journalism Practice*, 5-6, 627-637.

Burrell, J. (2016). How the machine thinks: Understanding opacity in machine learning algorithms. *Big Data & Society*, Jan-June, 1-12.

Christians, C. G., Facler, M., Richardson, K., Kreshel, P., & Woods, R. H. (2011). *Media ethics: Case and moral reasoning*. London: Routledge.

Couldry, N. (2013). Living well with and through media. In N. Couldry, M. Madianou, & A. Pinchevski (Eds.), *Ethics of media* (pp. 39-56). London, UK: Palgrave.

Couldry, N., Madianou, M., & Pinchevski, A. (2013). *Ethics of media*. London, UK: Palgrave Macmillan.

Cushion, S., & Sambrook, R. (2016). *The future of 24-hour news: New*

- direction, new challenges*. London, UK: Peter Lang Inc.
- Dahlgren, P. (1995). *Television and public sphere*. London, UK: Sage.
- Dahlgren, P. (2009). The troubling evolution of journalism. In B. Zelizer (Ed.), *The changing faces of journalism* (pp. 146-161). London, UK: Routledge.
- Dewey, J. (1927). *The public and its problems*. New York, NY: Henry Holt and Company.
- Diakopoulos, N. (2015). Algorithmic accountability: Journalistic investigation of computational power structures. *Digital Journalism*, 3(3), 398-415.
- Ettema, J. S., & Glasser, T. L. (1998). *Custodians of conscience*.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Ferree, M., Gamson, W., Gerhards, J., & Rucht, D. (2002). Four models of the public sphere in modern democracies. *Theory & Society*, 31, 289-324.
- Glasser, T. (1999). *The idea of public journalism*. New York, NY: Guilford.
- Habermas, J. (1979). *Communication and the evolution of society*. Boston, MA: Beacon Press.
- Habermas, J. (1990). *Moral consciousness and communicative action*. Cambridge, MA: MIT Press.
- Habermas, J. (1996). *Between facts and norms*. Cambridge, MA: MIT Press.
- Iggers, J. (1999). *Good news, bad news*. Boulder, CO: Westview.
- Just, N., & Latzer, M. (2016). Governance by algorithms: Reality construction by algorithmic selection on the Internet. *Media, Culture & Society*, 1-21.
- Karlsson, M. (2011). The immediacy of online news, the visibility of journalistic process and a restructuring of journalistic authority. *Journalism*, 12(3), 279-295.
- Kovach, B., & Rosenstiel, T. (2014). *The elements of journalism: What news people should know and the public should expect*. New York, NY: Three Rivers Press.
- Lichtenberg, J. (1991). In defense of objectivity. In J. Curran & M. Gurevitch (Eds.), *Mass media and society* (pp. 216-232). London: Edward Arnold.

- Maras, S. (2013). *Objectivity in journalism*. London, NY: Polity.
- McBride, K., & Rosenstiel, T. (2013). *The new ethics of journalism: Principles for the 21st century*. Thousand Oaks, CA: CQ Press.
- Meyers, C. (2010). *Journalism ethics: A philosophical approach*.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Mindich, D. T. Z. (1998). *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a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NY: New York University Press.
- Stephens, M. (2007). *A history of new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이광재 · 이인희 (역) (2010). 〈뉴스의 역사〉.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Napoli, P. M. (2014). Automated media: An institutional theory perspective on algorithmic media production and consumption. *Communication Theory*, 24, 340-360.
- Ombelet, P., Kuczerawy, A., & Valcke, P. (2016). Employing robot journalists: Legal implications,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International World Wide Web Conference*. Montreal, Quebec, Canada.
- Pariser, E. (2011). *The filter bubble: What the Internet is hiding from you*. New York, NY: Penguin Press.
- Patterson, P., & Wilkins, L. (2013). *Media ethics: Issues and cases*. New York, NY: McGraw-Hill.
- Phillips, A. (2010). Transparency and the new ethics of journalism. *Journalism Practice*, 4(3), 373-382.
- Putnam, H. (1981). *Reason, truth, and history*.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wls, J. (1971). *A theory of justice*. Cambridge: The Belknap Press.
- Riordan, K. (2014). *Accuracy,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How legacy media and digital natives approach standards in the digital age*. Reuters Institute.
- Sambrook R., & McGuire, S. (2016). Have 24-hour news channels had their day? In S. Cushion & R. Sambrook (Eds.), *The future of 24-hour news: New direction, new challenges* (pp. 15-25). London, UK: Peter Lang Inc.
- Schiller, D. (1981). *Objectivity and the news*. Philadelphia, PA: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 Schudson, M. (1978).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NY: Basic Books.
- Schudson, M.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Schudson, M. (2009). Factual knowledge in the age of truthiness. In B. Zelizer (Ed.), *The changing faces of journalism* (pp. 104-113). London, UK: Routledge.
- Schudson, M., & Anderson, C. W. (2009). Objectivity, professionalism, and truth seeking in journalism. In K. Wahl-Jorgensen & T. Hanitzsch (Eds.), *The handbook of journalism studies* (pp. 88-100). New York, NY: Routledge.
- Tuchman, G. (1978). *Making news*. New York, NY: The Free Press.
- Usher, N. (2014). *Making news at the New York Times*. Ann Arbor, MI: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Volokh, E. & Falk, D. (2012). First amendment protection for search engine results. *Journal of Law, Economics & Policy*, 8, 883-900.
- Westerstahl, J. (1983). Objective news reporting. *Communication Research*, 10(3), 403-424.
- Westin, D. L. (2016). The view from the United States: Three forces shaping the future of video news. In S. Cushion & R. Sambrook (Eds.), *The future of 24-hour news: New direction, new challenges* (pp. 27-38). London, UK: Peter Lang Inc.
- Williams, B. (2002). *Truth and truthfulness: An essay in genealog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투고일자: 2017년 07월 15일

심사일자: 2017년 08월 25일

게재확정일자: 2017년 09월 12일

## **Abstract**

# **A Habermasian Perspective to Journalism Ethics at the Digital News Age**

**June Woong Rhee**

Professor, Department of Communic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provides a Habermasian perspective to journalism ethics to answer the ethical questions raised by asymptotic factuality of news streams, emerging content providers of news-like digital content, and algorithmic news production. It is criticized that traditional news ethics emphasizing the norms of factuality and objectivity fails to cope with the ethical problems of digital news production and dissemination. Relying on Arendt's communicative concept of power and Habermas's notion of discourse ethics, this paper reconstructs ethical rules of discursive participation that can be applied to clarification and examination of ethical issues raised by asymptotic factuality of news streams, emerging content providers of news-like digital content, and algorithmic news production.

**K E Y W O R D S** Journalism ethics, news ethics, Habermas, discourse ethics, factuality, fairness, algorithmic news production